

# 圖書館法과 同施行令의 定向點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玄圭燮

(首都醫大圖書館 司書長)

## 《目 次》

1. 目的 및 概要
2. 問題의 展開를 為한 三要素의 導入
  - a) 經濟指標와 教育指標
  - b) 韓國大學圖書館의 國際的水準
3. 法制定의 基本的礎石
4. 圖書館行政의 政策的基調
5. 教育에의 參與
6. 圖書館法 및 施行令의 大學圖書館 關係條項
  - a) 人的要素
  - b) 物的要素
  - c) 機能的要素
7. 提言의 土臺

### 1. 目的 및 概要

圖書館法과 그施行令의 公布를 맞이하여 大學圖書館의 現位置를 大局的인 立場에서 觀望하고 法施行의 經過를 豫想하면서 大學圖書館이 取하여야 할 態勢와 아울러 圖書館行政을 맡은 當局에 對한 要望事項을 提示하려함이 本文의 目的이다.

本文은 大學圖書館의 成長을 招來하는 다음의 세 가지 要素(Factor)를 分析하는 데서 부터 始作된다.

- ① 韓國의 經濟指標
- ② 韓國의 教育指標
- ③ 韓國의 大學圖書館의 成長度

이 三要素의 相關度가 投影하는 座標는 韓國의 大學圖書館이 걸어 왔던 險難한 過去를 말하여 줄수 있으며 앞으로 걸코 順坦하지 않을 將來를 表現하는 組織의 檢討가 될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座標를 起點으로 하여 大學圖書館에 關聯된 圖書館法과 施行令의 法律의 表現을 考察하고 이에 따른 前進的構想에 依한 提言을 摸索하게 된다.

前半의 問題를 檢討하는 意義는 大學圖書館의 成長過程을 蹤여 보는데 있다기 보다는 그成長을 促進하였

던 諸要因의 妥當性如否를 抽出하는데 있다. 圖書館은 그것이 獨自的인 進路를 開拓하는 運動體만은 아니며 社會의 開發度와 教育의 進路 및 圖書館行政을 擔當하는 國家의 態度를 基礎로 하고 圖書館人의 自發的運動力を 起點으로 하고 있다 할것이다. 이러한 基礎的要素에 對한 簡單한 模型을 一瞥하기 為하여 三要素의 導入을 行하게 되었다.

後半의 問題는 圖書館人의 求心의 運動력을 促進시키는 法的強制力이 實際의 與件을 克服하는데 얼마만큼的能力이 있으며 또한 能力의 補完點은 어떤것이 있는가 하는것을 가려 보려는 것이다.

다만 注意해야 할것은 本文의 範圍가 法條文에 提示된 數量的規制에 까지 擴大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問題는 이미 다루어 졌던 바 있고 細部分에 對한 檢討를 行하기엔 充分한 紙面을 要할 것이므로 本文에선除外된다.

### 2. 問題의 展開를 為한 三要素의 導入

여기에 導入되는 三個要素는 圖書館成長의 遠心力이 되는 社會의 開發度와 經濟的成長度 그리고 이를 두 個의 要素에 依하여 外的影響力を 받으면서 圖書館自體의 振動力으로 키워왔던 成長度를 말한다. 우리는 이 三要素가 相關하여 形成하는 定點을 봄으로서 客觀的이고 冷澈한 圖書館의 座標를 決定할수 있을 것이다.

#### a) 經濟指標와 教育指標

經濟的成長度는 經濟指標 即 國民所得水準에 依하여 單純化할수 있다. 그러나 社會의 開發度는 教育, 保健, 文化等의 多元要因으로 形成된다. 多幸히도 本文의 限界는 大學圖書館인 故로 教育指標 即 就學率로서 單純한 模型으로 縮少할 수 있다. 于先 經濟指標를 國際的인 水準에 比較하면 表(1)와 같다. 所得群의 分類는 國際聯合 經濟社會局에서 定한 것이다. 각群中 代表國의 選定은 便利上 가장 잘알려진 國家를 答者가 選定한 것이다. (註 1)

(表 1)

群	國際的平均國民所得	代表國名	一人當國民所得
第 I 群	平均 1,366 \$	美 國	2,343 \$
II	760	佛 蘭 西	1,046
III	431	伊 太 利	
IV	269	日 本	240
V	161	比 律 賓	201
VI	72	韓 國	80

表(1)로서 韓國의 經濟指標는 最下位 所得群인 第 VI 群에 屬함을 알수 있다. 또한 VI群中 國際的 平均水準은 조금 넘었다 하더라도 第 V 群의 그것은 아직도 遠違함을 알수있다.

한편 教育指標를 같은 方法으로 比較하면 다음에 提示하는 表(2)와 같다. (註2) 이表의 平均水準 雖시 國際聯合에서 定한 것이며 韓國의 教育指標는 第 IV 群에

(表 2)

群	國 國 的 平 均 水 準	國名 初 等 及 高 等 教 育 除 外	大學就學率
I	91	佛 蘭 西	10.5
II	84	美 國	38.9
III	75	日 本	10.7
IV	60	韓 國	7.0
V	48	比 律 賓	9.7
VI	37	伊 太 利	5.2

屬하고 있다. 大學就學率은 全適齡者의 大學生數의 百分率로 表示된 것이며 같은 教育水準인 比律賓에 比해 약간 얕다 하겠으나 日本의 比率에 比한다면 程度以下の 水準은 아니라 할수 있다.

이제 經濟指標와 Education指標의 關聯을 뗏어相互比較를 할수 있다. 表(3)은 이러한 目的을 爲하여 試圖된 것이다.

表(3)을 通하여 大體로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을수

있다. 即 韓國의 Education水準은 國際的水準에 비추어 볼

(表 3)

I	II	III	IV	V	VI	佛蘭西	美國
教育指標			日本			伊太利	
經濟指標	VI	V	IV	III	II	I	

때 그 經濟發展과 關聯을 뗏어 觀察한다면 平均以上의 上昇度를 보여 주고 있으며 大學의 就學率은 Education指標에 比해 조금 낮은 便이라 할것이나 결코 平均以下의 水準이 아님을 알수 있다.

(註 1) 本表의 分類 및 平均水準은 國際聯合 經濟社會局編, 世界の 經濟開發と 社會開發, 日本厚生省大臣官房企劃室譯, 東京, 原書房, 1965. (p 118)에 準하였다. 다만 代表國名은 筆者が 選定하고 一人當國民所得은 1958年度를 基準으로 調査記入한 것이다.

(註 2) 韓國의 就學率은 다음의 資料에 依하여 計算하였다.

文教要覽 1964年度. 서울, 文教部, 1964.

計算方法은 國際聯合 ibid. p118 參照.

大學就學率은 文教部에서 發刊한 大學運營 正常化長期計劃. 1965年에 收錄된 것을 利用하였다.

伊太利의 就學率은 國際聯合, 世界統計年鑑 및 世界人口年鑑 1962年度를 利用하여 計算하였다.

#### b) 韓國大學圖書館의 國際的水準

圖書館에 關한 國際의 關係數量 收錄한 資料는 아직 없으며 散在된 각국의 統計資料만을 使用하였다 때문에 確實한 比較를 할수 없다. 그러나 不足한대로 美國과 日本의 統計資料를 中心으로하여 比較코자 한다.

表(4)는 (各國의 大學圖書館의 實數와 平均藏書數 및 司書數를 比較코자 作成된 것이다. 司書數는 아직 日本, 美國의 것을 除外하곤 얻지 못하였음을 遺憾스럽

(表 4)

國 名	大學圖書館數	平均藏書數 (一個圖書館當)	學生一人當平均圖書	平均司書數	其他職員	年 度
韓 國	109	36,269	25	0.5	1.2	1965
比 律 賓	14	45,071				1953
日 本	447	54,050	35	4	2	1961
美 國	1,832	430,602	74	25	26	1956
佛 蘭 西	35	3,748,314	600			1959
伊 太 利	70	135,186	42			1960

(註 3)

게 생각한다. 그러나 司書의 數的比較는 藏書가 5萬餘卷에 不過한 日本에 比해 볼때 韓國의 水準은 너무도 貧弱한 것이다.

表(5)는 圖書館의 藏書數만에 依하여 그順位를 決定  
(表 5)

1				佛蘭西		
2				美 國		
3	伊太利					
4			日 本			
5		比律賓				
6		韓 國				
圖書館 水準 / 教育 指標	VII	V	IV	III	II	I

하고 教育指標와 相互比較한 것이다. 圖書館의 順位는 國際的基準에 依하여 決定된것이 아니며 다만 便易上 現在 標本으로 採擇된 國家만을 基準으로 하였다.

이表의 焦點은 韓國의 圖書館水準이 教育指標가 第 IV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第 V群에 屬하는 伊太利의 水準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教育指標를 갖는 比律賓보다도 더 낮은 水準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明示하려는 것이다.

이 最終의 段階를 절차 우리는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수 있다.

① 韓國의 教育指標는 國民所得과 關聯하여 考察할 때 比較的 높은 便이며 國際的水準에 比하여 볼때에도 平均以下의것은 아니다.

② 韓國의 大學圖書館의 水準은 教育指標에 比하여, 볼때나 또는 圖書館自體의 絶對的水準에 비추어 볼 때 最下位의 程度를 나타내고 있다.

③ 韓國의 教育指標는 圖書館의 適正成長을 隨伴하지 않고 獨步하고 있으며 이것은 教育이 圖書館을 必要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圖書館이 教育에 參與할 수 없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註 3) 韓國의 統計는 韓國圖書館協會編, 「韓國의 圖書館」, 1965年度에 依據하였음. 比律賓, 佛蘭西, 伊太利의 統計는 Unesco Statistical Yearbook, 1963, p. 320—329에서 抽出하였고 學生數는 國際聯合, 世界統計年鑑 1962年度와 文教部, 大學運營 正常化 長期計劃, 1965에 準하여 算出하였다.

### 3. 法制定의 基本的礎石

上述한바와 같은 崛型의 與件에서 圖書館法은 圖書館의 發展의 態勢를 갖추게 하기 為한 法의 規制力を 마련하여 주고 國家의 文化發展을 指向하는 國家의 態度를 明確히 하게 되였다.

大學圖書館에 關한 法의 規定은 圖書館法 第25條 및

第27條에 設置에 關한 義務의 條項이 規定되었고 施設基準은 따로 閣令으로 定하게 되여 있다. 圖書館人(司書職)의 配置에 關한 條項은 同法 施行令第6條에 『司書를 두어야 한다』는 強制規定을 두고 있다.

그러나 먼저 念頭에 두어야 할것은 圖書館法과 同施行令에 作用하는 基本精神과 그의 法의 表現을 決定하는 定向點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은 非正常的現象 即 높은 教育指標에 낮은 圖書館水準을 是正하는 努力을 圖書館法이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圖書館의 適正成長을 隨伴하지 않은 教育指標의 獨自的前進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어찌하여 教育은 圖書館의 成長과 無關한 獨立的인 存在였을까? 하는 本質의問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教育은 分明히 圖書館을 要求했어야 하며 圖書館의 成長을 催促하는 刺戟劑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圖書館이 教育에의 參與를 奨勵하고 이에 對한 充分한 政策이 마련 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不幸히도 韓國의 大學圖書館은 教育에 依하여 刺戟받은 자취가 없다. 여기서 法制定의 根本精神은 『教育으로의 圖書館의 參與』를 最大目的으로 삼을 必要가 있다 할 것이다.

두번째로 考慮하여야 할것은 圖書館行政의 政策의 貧困이 오늘날의 圖書館成長을 阻止시키는 要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圖書館의 올바른 成長을 助長시키며 그發展을 催促하려면 政策의이고 計劃의行政要素가 附隨되어야 하는 것이다. 過去에는 如何間에 이 제 圖書館法이 制定됨에 이르러서는 그法의 經過를 圓滑히 하고 法의 効力を 거두게 하기 為하여 圖書館行政의 國家的對策이 서 있어야한다.

끝으로 指摘하려는 것은 法의 實効力에 關한 것이다. 法의 強制力이 理想의 標本만을 提示하고 實際의 舉件에 關한 充分한 配慮가 缺다면 實効력은 弱化된다. 따라서 法制定의 水準決定은 그最大公約數量 提示하여야 한다.

以上 三個의 基本的土台 즉 ①圖書館이 教育에의 參與 ②圖書館行政에 關한 配慮 ③法의 實効力은 圖書館法과 同施行令 및 設置基準令을 制定함에 礎石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項에서 上述한 問題를 土台로하여 각各 問題가 되는 곳을 살펴보려 한다.

### 4. 圖書館行政의 政策의 基調

오늘의 大學圖書館의 低開發性은 그責任이 비단 圖書館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指摘한바와 같이 圖書館이 教育의 中心이 될수 없었던 가장 根本的核心이 教育에 있었던 것이며 圖書館이 教育에 參與할수 있

는 最少限의 與件조차 가추지 못한 것은 그것을 擔當하는 國家的政策이 隨伴되지 않았는데 있는 것이다.

大學圖書館의 確固한 政策樹立은 國家教育의 定向點이 되는 것이며 正常的인 現代教育의 指標가 되는 것이다.勿論 韓國의 現實이 經濟的貧困에서의 脫皮를 指向하고 있어 產業開發을 為한 諸課題가 二次的重要性을 뛰우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圖書館法의 公布가 文化 및 教育의 前進을 為한 圖書館運動에 對하여 國家的態度를 보다 積極化한다는 表現일 전례 圖書館의 政策의 基調를 為한 適切한 對策도 마련 되어야 한다.

적어도 圖書館行政과 그政策의 直接的負擔을 지고 이를 調整하는 行政單位를 設置하거나 또는 充分한 要件을 갖춘 圖書館人의 參與를 開放할 수 있는 審議機關의 設置는 圖書館法의 施行과 더불어 반드시 附隨되어야 할 必要條件인 것이다.

大學圖書館의 올바른 育成이 참된 教育에 直結되어 있음을 認識한다면 圖書館의 成長을 助長하는데 啓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圖書館法의 經過措置를 圓滑히 하기 為하여 또는 法의 效果를 充分히 發揮케 하기 為하여서도 圖書館을 為한 獨立된 行政單位의 設置 및 審議機關의 附設이 必要한 것이다.

## 5. 教育에의 參與

大學圖書館의 參與機能은 教育에의 直接的參與에 있다. 圖書館은 다만 教育을 為한 方便에 지나는 것이 아니며 教育을 為한 中繼者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大學圖書館이 『大學의 心臟』이라고 일컬어 지게 되고 大學教育의 目標를 達成하는데 必要不可缺한 存在가 된 것은 그것이 教育에의 直接的 參與를 行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現代的 意義를 達成하는데 圖書館法와 施行令만으로 所期의 目的에 到達될 수 있을까? 적어도 教育自體의 改善을 為한合理的인 措置가 必要하지 않을까?

이에 對한 理論의妥當性을 立證하기 為하여 日本의 例를 들지 않을 수 없다.

日本 文部省令「大學設置基準」中 授業方法에 關한 規定은 圖書館의 教育이 參與價値을 살리고자 그單位計算方法을 改正하였다. (註4) 同法 第26條에 『一單位의 複修時間은 授業時間 및 自學自習의 時間을 合한 45時間을 標準으로 한다』라고 規定하여 自己스스로 學習하는 教育方法을 明確히 하고 이어單位計算方法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講義 또는 演習을 主로 하는 授業科目(講義 또는 演習만에 依하는 授業科目을 包含함)은 每週1時間半 또는 2시간 15週의 授業을 1單位로 한다. 다만 必要할 때에는 每週 2시간 15週의 授業을 1.5單位로 한다. 이境遇에는 每週授業時間과 大略同時

間의 自學自習을 行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改正하였다. 이러한 法改正의 底意는 教育方法의 改善을 為한 方向을 圖書館과 結付시키고자 한 것이다.

韓國의 教育指標가 읊바른 實數가 되기 為하여 또한合理的인 指標가 되기 為하여서도 이러한 問題는 반드시 惹起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註 4) 伊藤四十二. “大學圖書館に 関する 文部省令「大學設置基準」の 改正ならびに「大學圖書館設置基準要項」の 作成について 圖書館雜誌. Vol. 59, No. 7. p. 259—260. 參照.

## 6. 圖書館法 및 同施行令의 大學圖書館關係條項

이제 이미 公布된 圖書館法과 그施行令의 條項을 具體的으로 살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全體의 으로 作用하는 底流는 圖書館이 教育에 參與할 수 있는 基本與件을 造成하는데 그目的을 두고 있다.

問題를 單純화하기 為하여 于先 다음의 三個部分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 a) 人的要素
- b) 物的要素
- c) 機能的要素

附言하여 둘것은 여기에 言及하려는 事項이 반드시 圖書館法의 未備點을 指摘하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圖書館의 成長을 招來하려는 것에 關한 關係法의 措置 또는 반드시 法的條文化는 아니드라도 圖書館行政上 附隨되어야 할 問題들을 아울러 提示하고자 한다.

### a) 人的要素

무엇보다도 가장 重要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圖書館이 결코 物的構成物이 아니고 그原動力은 人間에 있다는 것이다. 圖書館人의 運動力を 陽性化하고 이에 振動力を 주어야 함이 圖書館發展의 捷徑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不幸히도 現圖書館法은 圖書館人에 對한 法의 表現이 심히 편견에 치우쳐 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이 問題는 이미 「國會圖書館報」에 言及된 바 있으며 「도협월보」에서도 司書의 法的地位와 身分에 關하여 圖書館人의 主張을 明白히 한 바 있다. (註 5)

圖書館人의 法的地位가 公私間에 統一性이 期하여져야 한다는 것과 法의 身分保障에 關한 正當한 處事를 再強調한다.

다만 本文에서는 大學圖書館에 關係되는 다음의 두 가지 問題만 살펴보려 한다.

(註 5) 國會圖書館報. 2卷4號. p. 11—27. 도협월보. 6卷 5號. p. 5—8를 보라.

### ① 司書의 適正數

大學圖書館의 圖書館人의 義務의 配置에 關하여 施行

令 第6條3項에 다음과 같이 明示되어 있다.

「實業高等專門學校·初級大學·教育大學·師範大學·大學(大學校의 大學을 除外한)과 大學校에는 그學生數가 500人以下인 때에는 2人의 司書職員을 두며 그學生數가 500人을 超過한 때에는 그超過하는 student數 800人마다 1人の 司書職員을 增置한다.」

이條項은 司書의 義務的配置에 對한 法的規制力を 明示하고 數的表現까지 具體화하였다는 것에 意義가 있다.

다만 注意을 要하는 것은 同水準이 他國家의 水準에 比해 가장 最下位의 程度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司書의 絶對數가 不足한 韓國圖書館界의 現實과 後進性을 免치못한 經濟的與件에 비추어 不得이 行하여 진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러한 水準은 決코 適正數가 되지 못함을 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恒久的인 措處가 될수 없는 것이며 잠정적인 것임을 認定하고 있어야 한다.

附言하고 싶은 것은 大學圖書館의 機能이 圖書館人만으로 充分히 發揮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圖書館에서 專門職以外에도 技術職員, 一般事務職員 其他 많은 雇員(出納手, 守衛)이 必要하며 이러한 非專門系職員의 助力을 얻어 以로서 完全한 動力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非專門系職員의 採用問題가 台頭될 것이며 그때에는 現在의 規定만으로는 不足한 것될 것이다.

## ② 司書의 養成

施行令 第4條4項에 圖書館人의 養成에 關한 事項을 文敎部令으로 定하게 되여 있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圖書館의 根源的動力은 司書에 있는 것이다. 圖書館人의 蓉出의 問題는 결코 需要供給에 依한 適定量을 定하는데 있지 않고 圖書館人精神의 確立과 그傳統의樹立에 있음을 銘心하여야 한다. 絶對數의 不足을憑藉하고 司書의 多量生產을 為한 性急한 措置는 圖書館의 將來를 暗暗한 位置에 停滯시킬 것이며 發展的類型을 形成하는 低止의 要因이 됨에 不過할 것이다.

圖書館學은 결코 圖書 또는 資料의 整理 및 利用을

爲한 技術習得이 目的이 아닌 것이다. 圖書館學의 使命은 圖書館이 人間을 創造하는 知的所產物의 保護와 그 媒介를 為한 文化的價值를 認識시키는데 있는 것이며 이러한 文化性에 關한 學問일수록 現實的慾求의 充足度가 양다는點을 일깨워주고 圖書館에 投身하는 데 必要한 充分한 覺悟를 決行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精神的 武裝위에 圖書館의 技術的內容이 累積되어야 할 것인즉 必要에 依하여 生產하는 司書製造工場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司書養成의 問題는 圖書館學教育에 關係되는 것이므로 教育을 擔當한 분들의 意見이 있겠기에 여기서는 省略하겠다. 다만 提言하고 싶은 것은 文敎部令으로 定하는 司書養成의 條項은 圖書館學의 上記概念에 立脚하고 適切한 教育關係者の 意見을 充分히 參酌하여 制定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b) 物의要素

圖書館의 成長은 自然發生的인 必要性에 依하여 招來되어 지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即 大學圖書館은 大學敎育의 目的을 極大滿足키 為한 絶對的存在的로 台頭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大學은 아직도 圖書館의 必要性을 確認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特히 私學은 圖書館의 施設確充이라든가 資料確保에 對해 大部分 外面하고 있는 現狀이다. 따라서 圖書館의 育成은 義務的要素로 登場하지 않을수 없다.

強制性을 補足する 條項이 되기 為하여서는 첫째로 要事項이 아니고 반드시 必須事項 다시 말하면 義務의인 것�이어야 하고 둘째로 細密한 條目과 具體的인 項目을 提示하여 歪曲混 解析을 防止하도록 하는 것이다.

現在 檢討中인 大學圖書館施設基準案은 이러한 強制的要素로 比較的 細密하게 草案이 되여 있다. 이 草案은 始初에 圖書館界에서 文敎部로 提出되었고 1964年 12月15日 各大學의 圖書館實務者의 意見을 听기 為한 會議가 열렸었다. 當時 討議되고 修正되었던 施設基準案을 보면 다음表와 같다.

大學圖書館施設基準(案)

學校別	初級大學 (高等專門學校)	大 學	摘 要	修 正 部 分
設施別	規格 및 數量	規格 및 數量	規格 및 數量	
設施名				
一般閱覽室	學生定員의 2.5% 以上 收容 座席을 確保한다.	1人當 座席數에 對한 面 積은 1.65平方米(0.5坪)	學生定員의 15%以上 收 容座席을 確保한다.	

閱覽施設	參考圖書室	開架制로하고一般的 및 特殊의 參考質問에 解答을 提供 할수있도록 充分하고 均衡잡한 參考圖書를 確保한다.	參考資料室은 一般閱覽 室내에 併置할수 있다. 但 所要面積은 確保하여 야 한다.	學生定員의 1.5%以上의 座席을 確保하며 開架制로하고…를 追加하였다.
	視聽覺室			
	閱覽用冊床	가로 180cm 세로 90cm의 4人用 冊床을 標準으로 한다.		
	閱覽用椅子	받침있는 1人用 椅子		
司書用冊床子 및 椅子	一式			
버티칼파일	若干			
藏書 및 書庫	藏書	1人當 30卷으로 하되 學科當 基本圖書는 다음과 같다. 1. 人文系의 學科當 4,000種 2. 理工系의 學科當 3,000種 3. 藝能系의 學科當 1,500種 初級大學은 4年制大學의 2/3	冊種이라함은 同一한 著書일지라도 版이 다르면 別種으로 본다.	人文系 2,000種 理工系 1,500種 藝能系 1,000種 初級大學은 4年制大學의 1/2로 改正 雜誌는 製本된 것에 限하여 冊數로 한다를 追加
	書架	調節式 書架		
定期刊行物室	雜誌	敎義雜誌 10種 以上 學術誌 學科當 3種以上	參考室에 附屬시킬수 있다.	學術誌는 學科當 6種 以上으로 改正
	目錄函	若干		
	雜誌架	若干		
	新聞	15種 以上 初級大學은 10種以上		
	司書用冊床子 및 椅子	若干		
貸出	貸出台, 圖書連搬車, 司書用冊床 및 椅子	若干	目錄函을 늘어 놓고 混雜이 없을 程度의 餘裕 있는 넓이가 必要	
	目錄函			
施設	書架, 目錄函, 打字機, 冊床子 및 椅子	若干		

同草案의 特色을 살펴보면 大體로 다음의 세 가지로 要約할수 있다.

① 同草案은 靜止의이라는 것이다. 圖書館은 成長하는 有機體(Growing Organism)이므로 施設基準을 定함에도 動態의일 것이 要望된다. 따라서 이草案은 長期의인 効力を 가질수 없으며 適切한 時期에 반드시 修正하여야 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야 한다.

② 具體的이고 細密한 部分까지 提示되어 있다. 이것은 圖書館育成이 自發的인 또는 自然的成長에 依據하지 못하는 韓國의 實情을 如實히 反映한것이라 하겠으나 어차피 圖書館의 成長을 強制的 要素로서 追求하면 法의 具體的提示는 不可避한 것이다 하겠다.

③ 實質的與件을 參酌하였다. 너무도 實質에 執着한 나머지 世界 어느 圖書館法의 水準에서도 볼수 없는 最

低位의 水準을 提示하였다는 비난을 免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法의 實効力を 거두기 爲한 不得已한 方法일 것으로 알고 있다. 거듭 말하거나와 이法의 時限은 決코 恒久的인 것이 아니고 어느 時期에는 자체없이 果敢히 修正補完하여야 할 것이다.

同試案은 아직 開令으로 確定된 것은 아니므로 補完의 機會가 있다할 것이다.

끝으로 強調하고 싶은 것은 同基準案이 期待하는 바와 같은 成果를 거두기 爲하여는 同令의 經過를 故底히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即 圖書館의 教育上の 價值을 再認識하고 이를 育成하는데 嚴格한 國家의 指導力이 發揮되어야 할 것이다.

### c) 機能의 要素

機能의要素란 圖書館活動을 爲한 基本與件의 造成可能單位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法의條項으로 成文化되거나 보다는 오히려 圖書館의 自然的行動으로 看做되는 事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實情이 圖書館의 機能이 發揮될수 있을만한 與件造成이 되여 있지 않으므로 機能의要素가 그 効力を 갖지 못하고 있다. 이機能의要素들이 그 能力を 發揮하지 못하고 있는 與件을 克服하기 爲하여서는 다음에 例舉하는 要項이 法의 規制力を 갖게되거나 또는 行政的措置를 取할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 ① 指定圖書制度의 強制化措置

指定圖書制度(Reserve Book System)는 圖書館의 教育的効用度를 增大시켜주는 가장 基本的機能이며 圖書館이 教育에 參與하는 始初가 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이제까지 韓國의 大學圖書館은 이를 爲한 成功의인 効果를 거두는데 失敗하고 있다. 이制度가 올바로 實施되지 않는 根本的要因은 가깝게는 大學圖書館의 未備點일 것이고 그보다 조금 면要因이나 보다致命의인 것은 教育에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教育을 맡은 擔當者가 이制度의 必要性을 認識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教育이 自學自習 및 直接經驗을 通한 教育方法을 完全히 履行치 못하는데 있다. 만일 指定圖書數를 法의으로 規定한다면 圖書館은 不可不 이制度를 採擇하게 될것이며 教育者도 指定圖書를 選定하지 않을수 없으며 學校行政當局도 이에 對한 對策을 세우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이制度의 法措置를 講究하는 方法으로는 두가지가 있다. 그하나는 大學圖書館設置基準案에 包含시키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教育法施行令에 이터한 事項을 插入하는 것이다. 前者の 境遇에는 藏書에 있어서 各科의 基本圖書中 適正量을 指定圖書로 構成케 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고 後者の 境遇는 이미 指摘한바 있는 學點單位計算方法의 改正等이 一種의 具體的인 方法이라

할 것이다.

### ② 圖書館豫算의 計定設定

現在 韓國의 大學圖書館은 大部分 獨立된豫算을 갖지 못하고 本部豫算의 一部로 세워지고 있다. 私立大學의 境遇 이러한 傾向은 特히 심하여 甚至於 大學總經營費中 一部로 또는 其他 雜費中에서 必要時에 使用하고 있는 實情이다.豫算이 計定되지 않은 主要原因是 大學當局이 圖書館의 育成을 外面하고 있는데 있는데 것이다. 이問題는 1961年 日本學術會議에서도 提示되어 『…圖書館獨自의豫算을 計定하고 施設費, 圖書購入費, 備品費, 製本修理費, 目錄製作費等, 圖書館의 專門의豫算을 마련하고 그經理를 獨自로 行하도록 하는 制度로 改正하도록 한다』(註 6)라는 對政府勸告案이 議決되었다.

圖書館豫算의 獨立性은 始捨하고豫算設定조차 되여 있지 않은 韓國大學의 非合理性은 반드시 是正되어야 한다. 그러나豫算의 项目決定은 大學當局의 自意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므로 法의強制力を 가질수는 없겠으나 政策의in 行政措置는 可能할 것이다. 적어도 圖書館豫算은 大學總豫算中 一個의 獨立된 項으로 라도 計定되어 쳐야 한다.

(註 6) 永田清一, “大學圖書館管理の研究” 圖書館界, 15卷2號 p. 48.

### 7. 提言의 土台

이제 까지 韓國大學圖書館의 現實的矛盾點을 높은 教育指標에 比해 낮은 圖書館水準이란 點에 두고 이를 教育의 參與라는 問題로 接近시켜 보았다.

大學圖書館이 上昇方向을 찾지 못했던 가장 뚜렷한 理由는 教育이 圖書館을 要求하지 않았으며 圖書館은 教育에 參與할수 있는 現實的與件이 造成되어 있지 않았다는 點을 指摘하고 이原因이 결코 圖書館界의 運動力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教育과 더나아가서는 國家의 圖書館行政에 關한 政策의in 貧困性에 基因함을 指摘하였다.

大學圖書館의 育成이 韓國의 教育指標의 虛數化를 防止하는 最良의 對策임을 認識하고 圖書館法의 公布에 따른 國家의 態度를 明確히 하기 爲하여서도 圖書館行政에 對한 積極的인 對策을 세워야 한다.

國家의 對策의 定向點은 教育과 圖書館의 接近點을 發見하는 것이고 이를 爲하여서는 教育의 圖書館依存度를 強化할 것과 圖書館이 教育에 參與할수 있는 與件造成을 爲한 보다 果敢한 施策을 斷行하여야 한다는 點을 提言하였다. 따라서 圖書館法의 人的, 物的 및 機能의要素에 關한 法規力은 教育과 圖書館의 目標設定의 共有領域을 最大로 擴大할수 있는 方向으로 이끌어 줄수 있어야 한다는 點을 提示하였다.